

1. 폐지이유

「건축물관리법」 제정(법률 제16416호, 2019. 4. 30. 제정, 2020. 5. 1. 시행) 및 「건축물관리점검지침」이 제정(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361호, 2020. 5. 1. 제정, 2020. 5. 1. 시행)됨에 따라 관련 고시 「건축물 유지·관리점검 세부기준」을 폐지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「건축물 유지·관리점검 세부기준」 (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140호, 2013. 4. 18.)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0000호

「건축물 유지·관리점검 세부기준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140호, 2013. 4. 18.)을 폐지합니다.

건축물 유지·관리점검 세부기준 폐지

「건축물 유지·관리점검 세부기준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140호, 2013. 4. 18.)을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